

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6년 2월 5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, 포항시장
- 2)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- 3) 상정일자
 -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)

1) 제안이유

-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 피해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전파(全破) 피해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의안의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2) 주요내용

-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포항시장으로부터 전파(全破) 피해 확정된 주택 중
 - 가.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철거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(이하 “미철거 존치주택” 이라 한다) 주택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
 - 나. 전파(全破)된 주택 철거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지

(건축중인토지를 포함) 상태로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종전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

다. 위 감면대상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이후 신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(유상거래 및 증여 등 무상거래 모두 포함)된 주택과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

라. 감면기간 : 2026년 ~ 2028년 (3년간)

※ 감면추계액

(단위: 백만원)

세 목	감 면 예상액	산 출 근 거	비 고
합 계	99		
재산세(주택)	48	(2026년 ~ 2028년) 16백만원 ¹⁾ × 3년 = 48백만원 ¹⁾ 2025년 감면액(감면건수:140건)	개별주택, 공동주택 가격 전년수준 예상
재산세(토지)	51	(2026년 ~ 2028년) 17백만원 ¹⁾ × 3년 = 51백만원 ¹⁾ 2025년 감면액(감면건수: 99건)	공시지가 전년수준 예상

3) 관련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윤)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, 관세부과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포항시 세수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므로, 지방세 부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